

■ 특별공급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 자격검증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 등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 신청서, 특별공급 청약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무주택서약서	본인	• 건본주택에 비치(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)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.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신청 시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		○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•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'청약Home'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[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철거주택소유자 제외, 인터넷청약의 경우 생략]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	• 본인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,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• 직계 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(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)
		○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(주택공급신청자)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[해외체류(단신부임)관련 입증서류 참조]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 등이 포함)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	
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	본인	• 센트레빌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centreville.com">http://www.centreville.com</a> )에 구비
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(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)
	○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포함 발급
	○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, 근로자의 경우 "재직증명서" 필수)
	○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•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 <a href="http://www.iros.go.kr">www.iros.go.kr</a> 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•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
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자녀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[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]
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직계비속	•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를 혼인기간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[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]
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) - 임신진단서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한정
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(센트레빌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centreville.com">http://www.centreville.com</a> )에 구비)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	○	인감증명서(본인발 급용)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
	○	위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건본주택에 비치
	○	신분증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접수장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
※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,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

■ **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**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(출산휴가,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('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]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(직인날인)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	①,②,③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 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①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-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	①,②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, ②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법인결산서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	①,② 해당직장 / 세무서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,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(직인날인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표,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직장 /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소득이 없는 경우 : 소득사실증명서(신고소득사실 없음)	① 건본주택	
기타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[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]	- 거주지관할구역 - 고용센터 등 - 해당직장	

※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직인날인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■ 해외체류(단신부임)관련 입증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 등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</li> <li>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</li> <li>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</li> </ul>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 (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)</li> </ul>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	본인 및 세대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</li> </ul>
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.(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)
- ※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,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,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.
- ※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.(해당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)
- ※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,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.

# 자격요건 확인서 (신혼부부)

계약자 성명				당첨 동·호수	동 호	
혼인신고일 (혼인관계증명서)	년	월	일	1순위 (혼인7년 이내, 유자녀)		2순위 (혼인7년 이내, 무자녀 외)
미성년인 자녀 수 및 출생신고일 (입양신고일)	_____명 가족관계증명서 ※ 임신 중인 경우 출산예정일	①	년	월	일	
		②	년	월	일	
		③	년	월	일	
		④	년	월	일	
		⑤	년	월	일	
월 평균 소득	소득증빙서류 (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소득증빙서류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) ※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					
	가구 총계 (_____명)	(월평균)				
	계약자	(월평균)				
		(연간소득 개월)	원 / 재직기간			
	배우자	(월평균)				
		(연간소득 개월)	원 / 재직기간			
	세대원	(월평균)				
		(연간소득 개월)	원 / 재직기간			
세대원	(월평균)					
	(연간소득 개월)	원 / 재직기간				
소득기준 순위	가구원수			_____명		

## 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

공급유형	비율	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생아우선공급, 우선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이하	~7,004,509원	~8,248,467원	~8,775,071원	~9,563,282원	~10,351,493원	~11,139,704원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120% 이하	~8,405,411원	~9,898,160원	~10,530,085원	~11,475,938원	~12,421,792원	~13,367,645원
신생아일반공급, 일반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140% 이하	7,004,510원~ 9,806,313원	8,248,468원~ 11,547,854원	8,775,072원~ 12,285,099원	9,563,283원~ 13,388,595원	10,351,494원~ 14,492,090원	11,139,705원~ 15,595,586원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160% 이하	8,405,412원~ 11,207,214원	9,898,161원~ 13,197,547원	10,530,086원~ 14,040,114원	11,475,939원~ 15,301,251원	12,421,793원~ 16,562,389원	13,367,646원~ 17,823,526원
추첨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4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9,806,314원~	11,547,855원~	12,285,100원~	13,388,596원~	14,492,091원~	15,595,587원~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	17,823,527원~

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,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의 자격이 다르거나,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 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